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6
----------	------

제출일자 : 2021. 5. 17

제출자 : 달성군수



##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20.12.22. 공포, ' 21. 6.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 나. 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6조제2항)
-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전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2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1. 4. 15. ~ 5. 5.)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인으로 구성하되” 를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 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 을 “2명” 으로 “달성군의회 위원” 을 “달성군의회 의원”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3인” 을 “5명”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2인” 을 “2명”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임원과” 를 “임직원과” 로 한다.

제6조제2항 “재적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원은” 을 “위원은” 으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을 “재적위원수의 계산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10조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 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u>5인으로 구성하되</u>,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인의 위원은 법관</u> 교육자 또는 학식 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 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2. <u>2인</u>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u>달성군의 회 위원</u>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 (생 략)</p> <p>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u>3인</u>중에서 선 임하여야 한다.</p> <p>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u>2인</u>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조(기능) ①(생 략) 1·2·3·4·②·1·2 (생 략)</p> <p>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 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 른 것을 말한다)의 <u>임원과</u> 그 퇴직공 직자에 관한 사항</p>	<p>제2조(구성) ① ----- ----- -----<u>7명으로 성별을 고려</u> <u>하여 구성하되</u>,----- -----.</p> <p>1. <u>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u>----- ----- -----.</p> <p>2. <u>2명</u> -----<u>달성군의회 의</u> <u>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1. -----<u>5명</u>----- -----.</p> <p>2. ----- <u>2명</u> ----- -----.</p> <p>제3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2·3·4·②·1·2 (현행과 같음)</p> <p>3.----- -----<u>임직원</u> <u>과</u>-----</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위원 3분의 2</u>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2·3·4·5 (생략)</p> <p>③ (생략)</p> <p>1·2 ·3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u>의원은</u> 제2항의 <u>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u> 이를 제외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u>아니한다</u>.</p> <p>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u>재산등록 선물신고</u>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출석위원</u> ----- -----.</p> <p>1·2·3·4·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2 ·3 (현행과 같음)</p> <p>④. ----- -----<u>위원은</u>----- --<u>재적위원수의 계산 시</u>----- -----.</p> <p>⑤. ----- <u>않는다</u>.</p> <p>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 ----- <u>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u>, ----- ----- -----.</p>
--	---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삭제
  -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